

2003. 6. 30. 10:00
제1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

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

심 사 결 과 보 고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[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]

[심 사 보 고]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

- 제 출 일 : 2003. 6. 11.
-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3. 6. 12.

다. 상정일자 : 2003. 6. 24. (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상정의결)

라. 의안번호 : 제 2003 -25호

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-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“거창군농업인 소득지원기금”을 “거창군농업발전기금”으로 전환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당초의 제명 “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”를 “거창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”로 개정함. (안 제명)
- 기금의 운용관리는 거창군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로 관리하되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4조)
- 융자금 지원사업은 농업인소득증대, 지역명품육성, 축산환경, 농·축산업 운영자금, 농업재해 피해복구사업등이며, 보조지원 대상사업은 농작물재해보험자부담 보험료 일부지원, 이차보전

지원, 기타 심의회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규정함. (안 제8조)

- 융자금 지원조건은 시설자금 5천만원이하 3년거치 5년균분상환
생산 및 운영자금 1천만원이하 1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규정함.
(안 제 11조)
- 종전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
이루어진 것으로 규정함. (안 부칙 제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보조금의 UR협상결과 허용대상 여부

구 분	현 행	변 경
융 자 금	○ 시설자금 : 2천만원 ○ 생산 및 운영자금 : 1천만원	○ 시설자금 : 5천만원 ○ 생산 및 운영자금 : 1천만원
융 자 금 상환기간	○ 시설자금 : 2년거치 3년균분 ○ 생산 및 운영자금 : 1년거치 2년균분	○ 시설자금 : 3년거치 5년균분 ○ 생산 및 운영자금 : 1년거치 3년균분
보조지원 대 상	(신 설)	○ 농작물 피해보험 자부담 보험료 일부지원, 심의회에서 정한 기타 보조지원사업

중점검토사항

-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 보험료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
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
- UR협상결과 동 보조금이 감축대상보조금(Amber Box)에 해당
하는지, 허용대상보조금(Green Box)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야
할 필요성이 있고 감축대상 보조금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
제외해야 함으로 집행부에 허용대상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자료를
제시해야 할 것임.
- 조례안의 체제나 형식,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생략

5. 토론요지

○ 생략

6. 수정안 요지

○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“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”을 “거창군농업발전기금”으로 전환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체제나 형식,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함.

8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생략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생략